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고용서비스 행정지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I 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부문 (근무예정지)	채용인원	
				일반 전형	장애인 전형
기간제 근로자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행정지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 지원 ▲ 기타 고용센터 업무 지원 등	대전고용센터	20명	1명
			공주고용센터	1명	-
			세종고용센터	3명	-
			논산고용센터	2명	-

※ 채용부문 중복 지원 불가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 제한 없음
학력·전공	· 무관
성별	· 제한 없음
연령	· 제한 없음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 유의사항 참조)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III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 전형	면접 전형
▲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 서류전형 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인원의 2~5배수 이내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 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2. 2. 25.~ 2022. 3. 2.	• 워크넷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제출한 지원서만 유효 ※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접수 불가 → (붙임1) 응시지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 필독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3. 4.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전형	2022. 3. 7.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3. 8. (예정)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내)

IV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서류전형>	○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경력사항 <서류전형>	○ 고용센터 근무 경력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 경력 보유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서류·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면접의 5% 부여 ○ 장애인의 일반 전형 지원 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단,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점 적용 없음 ※ 가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중복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가산

V

접수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① 입사지원서(경력, 자격증 등) ② 자기소개서(첨부 불필요, 워크넷 e-채용마당 입사지원 서식 입력 제출) ③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붙임2] : 자필 서명 스캔본(PDF) 첨부 ※ 입사지원시에는 경력 및 자격증 보유 내역을 기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자료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가 응시지원서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면접시 불이익	원서접수 시 제출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벌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장애인 증빙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 가족증명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VI

근로조건

- **채용 예정 기간:** 2022. 3. 10. ~ 2022. 5. 24.
- **보수수준:** (기본급) 월 1,914,440원
 - * 정액급식비(14만원), 그 밖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각 채용부문별 고용센터(아래 참조)
 - **대전고용센터**(본관: 대전 서구 문정로 56)
 - ※ 상황에 따라 별관(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2층) 등 본관 외 사무공간 배치 가능

- **공주고용센터**(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 4층)
- **세종고용센터**(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 **논산고용센터**(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 **주요 업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지원, 기타 고용센터 업무 지원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VII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2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전형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붙임3 서식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담당자 이메일 sleet23@korea.kr로 청구서 제출) 단,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반환청구되지 않은 서류는 상기 청구기한까지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042-480-6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시지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

* 접수방법: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 온라인 접수

1. 응시지원서는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2. 접수 마감일 및 마감 시간은 지원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 여유를 두고 접수
 - **전산오류 등으로 마감 시간을 넘긴 경우에도 구제 방법 없음**
3. **반드시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가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면접심사 당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경력사항은 **채용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기간만 작성**(최대 10건)하고, **담당 업무내용은 채용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 ‘업무 총괄’, ‘관련 업무 일체’ 등으로 기재하여 명확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경력사항의 재직기간 기재방법 -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기준으로 작성**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에 15일 이상 근무시 해당월, 15일 미만 근무시 다음월
근무종료일이 속한 월에 15일 이상 근무시 다음월, 15일 미만 근무시 해당월
 - 예1) '21.1.13.~'22.1.31. 근무한 경우 → (재직기간) 2021년 1월~2022년 2월
 - 예2) '21.1.12.~'21.6.11. 근무한 경우 → (재직기간) 2021년 1월~2021년 6월
 - 예3) '21.1.20.~'22.1.19. 근무한 경우 → (재직기간) 2021년 2월~2022년 2월
6. 직무경력기술서는 ‘경력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
7. 자기소개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에 맞는 내용을 작성

*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시 자필 서명 스캔본(PDF) 첨부하여 제출
[붙임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수 집 정 보
입사지원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자우편(e-mail)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 장애 여부 ☐ 직무관련 경험·경력·자격 사항 ☐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생년월일 등
위 입사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경력증명서 등 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채용전형에
한하여 필요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성명

(서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